

KB금융 반부패/뇌물 정책

2022.5.10.

동 정책은 『KB금융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 『협력회사 윤리행동기준』, 『기부금 운영규정』, 『내부통제 규정』 등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발췌 등)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기준은 KB금융그룹 전 임직원(협력사 등 포함)에 적용되는 반부패/뇌물 정책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1. 목적과 적용범위, 임직원 책임과 의무, 보고의무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이하 "행동기준"에서는)의 목적과 적용범위, 보고의무는 다음과 같다.

(목적) 이 기준은 각종 법규 및 윤리규범, 내부통제규정, 준법감시업무규정, 기타 회사의 내규 등에 따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이 기준은 모든 임직원(계약직 및 파트타임 직원 포함) 및 협력사에게 적용된다.

(임직원 책임과 의무) ① 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관련법 령과 회사 내규 및 이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자신의 행동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임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회사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본 행동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업무상 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보고의무) ①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1.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이 행동기준, 관련법령 및 회사의 내규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2. 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와 연루되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2. 이해상충행위 금지

(이해상충행위 금지 원칙) ① 임직원은 업무 수행시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회사 또는 계열사의 고객이나 다른 임직원과 공모하여 투기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인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회사의 명예나 평판 등을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해상충행위 금지) ① 임직원은 근무시간 중 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임직원은 임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사업기회

- 를 포착하게 된 경우 회사에 우선적으로 귀속시켜야 하며 이에 대하여 부당한 대가를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되며, 담당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 또는 친인척 등 회사가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계열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 은폐,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정한 업무수행

(공정한 업무수행 원칙) ① 임직원은 업무상의 지위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주식관 련 채권 등 증권의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개인의 투자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금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임직원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원칙)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한 경쟁) 임직원은 경쟁사에 대한 비방을 삼가고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고객 또는 협력사에게 비용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 또는 계열사와 관련된 사업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력사 등과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하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조건 강요, 비용전가,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등(부패 및 뇌물방지)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원칙) ①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게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임직 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

② 임직원의 가족, 친·인척 및 지인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령하는 행위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5. 청렴계약 (협력사 관련 반부패 및 뇌물방지)

(청렴계약 원칙) ① 임직원은 회사에 필요한 물품, 서비스, 공사 등 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가격, 품질, 기술 등을 기준으로 신뢰성 및 성실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공급업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본인 또는 친인척 등과 관련된 특정 협력사에게 우선적인 대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협력사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 체결) 준법감시인은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렴한 계약체결을 위한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6. 기부금

(적용규정) 기부금 관련된 부분은 '기부금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기부금 운영규정) 기부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부 대상, 기부금지 대상 등 주요 기준과 처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기부금 운영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치기부금) 국내에서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업의 정치기부금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부금 운영규정'에 의해 정치인 및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금지하고 있다.

7. 감독기구

(임직원 법규준수행동기준) 해당 행동기준은 준법감시인 소관 업무이며 내부통제규정 제12 조에 따라 위반사항 발생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기부금) 기부금 운용관련해서는 '기부금 운영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부금 운영한도 등 기부금 운영 관련(주요 사회공헌 활동)제반 사항은 ESG위원회규정 제5조 등에 따라 ESG위원회에 보고한다.